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
----------	----

2022. 9. 28.(수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변종오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2년 8월 30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22년 9월 19일

- 제40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변종오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명 개정 사항과 장학금 지급정지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인용조례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)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### ○ 지급정지 근거 법령 반영(안 제8조)

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→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### ○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른 용어정비 등(안 제7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개정안은 장학금 지급 및 지급정지에 대한 사항 중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 조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근거가 되는 조례의 명칭변경 및 근거 법령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개정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 조례의 명칭이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에서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그 내용의 정당성이 인정됨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제1조 중 “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”를 “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”로 반영함.
- 제7조제3항 중 “제8조의 규정”을 “제8조”로, “없는 한 당해”를 “없으면 해당”으로 정비함.
-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반영함.
  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본 조례안은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써 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호에 해당하여 조례안 예고 생략.
- 관련 부서: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# 라. 검토의견

- 본 개정안은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」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장학금 지급정지 근거가 되는 조례의 명칭 변경 및 근거 법령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, 그 밖에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 정비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없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(변종오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8월 30일

발의자 : 변종오, 이동우, 김종필,  
김호경, 박지현, 박진희,  
유재목

### 1. 제안이유

-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조례의 제명 개정 사항과 장학금 지급정지 근거가 되는 상위법률을 반영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인용조례 개정사항 반영(안 제1조)
  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- 지급정지 근거 법령 반영(안 제8조)
  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→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### 3. 조례안 : 붙임

#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붙임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협의 :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응총괄과
- 조례안 예고 : 생략(「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4호)

##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제8조의 규정”을 “제8조”로, “없는 한 당해”를 “없으면 해당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가 정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또는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자녀장학금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7조(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.</p> 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 장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.</p> <p>1.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조례」 제14조에 해당한 때 단, 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7조(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/p> <p>제8조-----</p> <p>---- <u>없으면 해당</u> -----</p> <p>-----.</p> <p>제8조(지급의 정지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. 다만, 대원이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.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

## 관계법령

### □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의용소방대원의 해임) ① 시·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.

1.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
  2.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. 다만,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3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  4.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5.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
  6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「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」

제22조(경비부담) ①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.

1.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청사·장비·물품 구입비 및 유지·관리비
  2.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
  3.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
  4.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·훈련에 필요한 경비
  5.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
- ② 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는 대원의 사기진작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장학금, 국내연수, 국외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